

수탁자책임활동 이해상충 방지정책

2023.06.14 제정 주식리서치본부 ESG리서치팀

목 적

NH-Amundi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수탁자책임활동수행에관한내부지침」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책임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내부통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한다.

조직체계 및 역할

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수탁자책임활동시 이해상충의 사전 예방 및 발생 상황에서의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상시적인 점검과 개별 사안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조치를 행한다. 또한 수탁자책임활동 수행 관련 부서 실무자는 준법감시인의 요청이 있을 시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실시한다.

이해상충 유형

수탁자책임활동시 투자대상회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고객이나 수익자의 이익과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 등이 존재하므로, 각 부서에서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아래의 유형별로 점검하며 관리한다.

1. 회사와 임직원과의 관계
2. 회사와 투자자와의 관계
3. 회사의 관계회사와 투자자와의 관계
4. 임직원과 투자자와의 관계
5. 특정투자자와 다른 투자자와의 관계

이해상충 사전 예방 방안

회사는 수탁자책임활동시 이해상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 회사의 각 부서에서는 사전적인 검토를 통해 수탁자책임활동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해 상충 가능성을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낮추어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한다.
-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선정과 투자에 있어 관계법령 및 펀드 규약의 준수 외에 합리적 내부가이드라인에 의해 수행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펀드 및 투자자를 위하여 최적의 투자대상회사를 선정하여 투자한다.
- 회사는 투자자를 유치함에 있어, 부당한 투자자 유인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며, 펀드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투자자 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하지 않는다.
- 회사는 이해상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3자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자 기관을 활용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기관이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고려하여 이해상충을 사전에 방지한다.
- 회사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무형의 정보차단벽(Chinese Wall) 설치를 통해, 중요 정보에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한다. 다만, 회사의 업무 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중요정보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차단벽 통과를 허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장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사전적으로 받아야 하며, 통과 이후 정보제공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한다.

이해상충 발생시 대처 방안

수탁자책임활동시 이해상충 이슈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게 되는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 조속히 해당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이행한다. 해당 이슈에 대한 조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기록하고 유지한다.

임직원 대상 이해상충 방지 교육

회사는 임직원이 수탁자책임활동 이해상충 방지정책을 확인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

- 회사 내부망 등에 게시한다.
- 임직원 대상 정기 및 비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 정책 개정시 임직원에게 대하여 주의를 환기한다.

정책 검토 및 개정

회사는 본 정책이 수탁자 책임과 관련된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회사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책을 개정한다.

대외 공개

회사의 수탁자책임활동 이해상충 관련 방지정책 및 발생사실 관련 내역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해관계자분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외공개가 어려운 민감 사안의 경우에는 수탁자책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